

● 세계 각국의 도서관법

독일의 도서관법

독일도서관법 연혁

Frankfurt 시의 협력하에 서적출판업자단체 및 서적거래업자단체에 의하여 이미 1946년 Frankfurt 시에 설립된 독일도서관은 1952년에는 권리능력을 가지고 재단법인으로 되었으며 이는 연방 및 독일서적거래소의 출자에 의하여 Hessen 주 및 Frankfurt 시가 Hessen 주 공법에 의하여 설치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독일도서관은 처음에는 서방측 점령지구를 위한 중앙도서관으로 출발하였으나 후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앙도서관으로 되었으며, 이로써 과거 Nazi 하의 독일제국이 Leipzig 의 독일도서관(die Deutsche Bucherei)에 부여하였던 것과 동일한 지위를 취득하였다. 독일도서관은 그 제도 및 업무의 성질로 보아 국가를 대표하고 국제적 활동영역을 갖는 하나의 중앙적 조직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의 형성과 더불어 연방의 일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했었다. 따라서 독일도서관법은 기본법 제87조 제3항에 의한 연방기관으로서의 구성을 실현하였다.

독일도서관법 제1장은 연방기관으로서의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의 설립을 규정하고 그 제2장은 법률상의 납본의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납본의무는 이미 「독일도서관에 대한 납본제출에 관한 법률 : 납본법」[Gesetz über die Ablieferung von pflichtstücken an die Deutsche Bibliothek(Pflichtstückgesetz)]에 의하여 성립하였으며, 이 법률안은 연방정부가 1967년 입법단체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 법률안의 처리시에 연방상원은 독일도서관이 우선 연방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연방하원으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연방하원의 학문·문화 및 출판 위원회의 위원들에 의하여 연방기관으로서의 구성과 납본의무를 규정하는 독일도서관법안이 제출되었으며 전기의 납본법은 폐기되었다.

대부분의 서적출판업자들은 이미 1946년의 독일도서관의 설치 이후 자유의사로 그 신간서적을 독일도서관에 제출하여 왔다. 출판업자가 독일서적거래소에 속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는 거래소정관에 의하여 그와 같은 납본의무를 부담하였다. 포괄적인 법률상의 납본의무가 거의 모든 문화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독일에 있어서도 이행되어야 하며, 이로써 중앙도서관으로서의 독일도서관이 모든 신간서적을 완전하게 규율하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독일도서관법

—Gesetz über die Deutsche Bibliothek—

1969년 3월 31일 공시(BGB1. IS. 265)

연방하원은 다음의 법률을 의결하였다.

제1장

[독일도서관](연방기관)의 설치

제1조 독일도서관의 설립

독일도서관(die Deutsche Bibliothek)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앙도서관(die zentrale Archivbibliothek)이다. 독일도서관은 권리능력을 가지는 공법상의 연방직속기관으로서 Frankfurt am Mian에 설치한다.

제2조 업무

1. 독일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에서 출판된 또는 음반(Tonträger)의 경우에는 제작된 출판물(Druckwerke)의 수집·목록작성 및 도서관에의 기재
- ② 1945년 5월 8일 이후 외국에서 출판된 또는 제작된 독일어 출판물, 독일어 출판물의 타국어로의 번역 및 독일에 관한 외국어 출판물의 수집·목록작성 및 도서관에의 기재
- ③ 외국의 국립도서관리기구 및 도서관리상의 제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조직과의 관계 유지.

2. 제 1 항에 의한 업무가 악보(Musiknoten) 및 음악음반(Musiktonträger)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독일도서관의 분관(Abteilung)으로서 독일음악도서관(das Deutsche Musikarchiv)이 Berlin에 설치되며, 이는 그 설치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출판물의 개념

- 1. 이 법에서 출판물(Druckwerke)이라 함은 복제과정(Vervielfältigungsverfahren)에 의하여 제작되며 보급의 목적을 가지는 활자, 형상 및 음에 의한 모든 표현수단(alle Darstellungen in Schrift, Bild und Ton)을 말한다.
- 2. 다음 각 호의 제작품은 출판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① 영화(Filmwerke, Laufbilder), 음상화(Tonbildschauen) 및 환동화(Einzellichtbilder).
 - ② 법령으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서만 보급되는 업무보고서, 연보 및 행정보고서.
 - ③ 전적으로 영업상의 목적·업무상의 목적, 기업내부의 목적, 거래목적 또는 가정 생활이나 사교생활에 사용되는 문서.

제4조 열람도서관(Präsenzbibliothek)으로서의 독일도서관

독일도서관의 보유도서는 그 설치장소에서(an Ort und Stelle)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이용규칙(Benutzungsordnung)에 따라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

제5조 규약

1. 독일도서관은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규약을 비치한다.
2. 규약의 작성 및 변경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3. 규약의 작성 및 변경은 주무연방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4. 규약 및 그 변경은 연방장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관

독일도서관의 기관에는 관리위원회(der Verwaltungsrat), 관장(der Generaldirektor) 및 독일도서관 자문위원회(der Beirat der Deutschen Bibliothek)와 독일도서관의 독일음악도서관 자문위원회(der Beirat der Deutschen Musikarchiv der Deutschen Bibliothek)가 있다.

제7조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4인의 연방정부 대표자(이 가운데 2인은 감독관청으로서의 연방주무부의 대표자), 1인의 독일연구원(di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대표자, 3인의 독일서적거래소(der Bo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회원, 1인의 독일악보출판협회(der Deutsche Musikverleger verband)회원, 1인의 연방음반제작협회(der Bundesverband der Phonographischen Wirtschaft)회원 및 1인의 Frankfurt am Main 시의회 대표자로 구성된다. 연방주무부의 대표자중 1인이 회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행사한다.
2. 독일도서관 및 그 발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또는 현저하게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는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책임에 속한다. 관리위원회는 예산안의 확정 및 예산안의 범위안에서의 수정에 관하여 의결하며 회계검사의 종료에 의하여 관장의 책임을 해제한다.
3. 기타 상세한 것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8조 관장

1. 관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과 방침 및 규약의 규정에 따라서 연방기관의 제업무를 수행한다.
2. 관장은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독일도서관을 대표한다.

제9조 자문위원

1. 독일도서관의 자문위원회는 독일도서관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관리위원회 및 관장에게 조언한다. 독일음악도서관의 특수한 업무에 관하여는 독일도서관의 독일음악도서관자문위원회가 관리위원회 및 관장에게 조언한다.
2. 관리위원회는 도서관 및 도서거래의 제도에 관한 전문가 12인까지를 독일도서관 자문위원회위원으로 임명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은 독일서적거래소의 제청에 의하여 임명된다. 독일도서관의 독일음악도서관 자문위원회의 장은 독일도서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을 겸한다.
3. 관리위원회는 음악도서관리와 음악도서출판 및 녹음과 음반공업의 제부분의 전문가 12인까지를 독일도서관의 독일음악도서관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의 4분의 1씩은 각각 독일악보출판협회 및 연방음반제작협회의 제청에 의

하여 임명된다. 독일도서관 자문위원회의 장은 독일도서관의 독일음악도서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을 겸한다.

4. 기타 상세한 것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0조 감독

1. 독일도서관은 연방주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2. 감독은 법률 및 규약의 준수여부에 한정된다.

제11조 소속공무원의 신분과 임명

1. 독일도서관의 소속공무원은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제2조 제2항이 의미하는 준연방공무원(mittelbare Bundesbeamte)이다.
2. 관장 및 그 상임대행자는 관리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다.
3. 그 밖의 소속공무원은 관리위원회의 장이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2조 최고집행기관

관리위원회의 장은 최고업무집행기관(oberste Dienstbehörde)이다.

제13조 예산조직

1. 독일도서관의 예산제도, 금고제도(Kassenwesen)회계제도 및 회계장부비치와 회계검사에 관하여는 관계 연방법령을 적용한다.
2. 독일도서관은 각 업무연도의 개시전 적절한 시기에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3. 예산안의 확정, 예산안의 범위안에서의 수정 및 회계검사의 종료에 의한 관장의 책임해제에 관한 의결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4. 예산안은 연방주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4조 종업원의 법률상 지위

1. 종업원(die Angestellten und Arbeiter)의 법률상 지위는 연방의 피고용자(die Arbeitnehmer des Bundes)에게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른다.
2. 연방종업원임금계약(Bundes-Angestelltentarifvertrag)의 보수군(Vergütungsgruppe) II b 이상에 속하는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의 체결 및 그 해지에 관하여는 관장은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직원의 인수

1. 이 법의 시행으로, Frankfurt am Main 의 재단법인 「독일도서관」의 소속공무원은 「독일도서관」의 소속공무원으로 된다.
2.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Frankfurt am Main 의 재단법인 「독일도서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연방기관으로서의 「독일도서관」에 인수되어야 한다.
3. 이 법의 시행으로, Frankfurt am Main 의 재단법인 「독일도서관」의 정년퇴직자, 미망인, 고아 및 그 밖의 연금수령권자는 독일도서관의 연금수령권자로 된다. 연방공무원법 제180조가 준용되어야 하며, 이때에 이 법의 시행은 연방공무원법(das Bundesbeamtengesetz)의 시행으로 본다.

Frankfurt am Main 의 재단법인 「독일도서관」의 전소속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연방공무원법 제180조 제4항이 적용된다.

제16조 재단법인 「독일도서관」의 위임

이 법 시행시에 Frankfurt am Main의 재단법인 「독일도서관」에 대하여 성립하게 되는 재산법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재단법인 「독일도서관」은 이를 연방기관인 「독일도서관」에 위임하여야 한다.

제17조 관장 및 이사의 보수 등급

1963년 12월 18일의 공포(연방법률공보 IS. 916)에 의하여 개정된 그리고 1969년 3월 31일의 공무원법 및 보수법상의 규정의 개정을 위한 제6차 법률(연방법률공보 IS. 257)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된 연방보수법(das Bundesbesoldungsgesetz)의 별표 I로서 첨부된 보수규정(Besoldungsordnung) A 및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개정사항은 독일 법령집 I.H.40에 수록되어 있음)

제2장

납본의무

제18조 납본의무의 근거

1. 이 법의 적용지역내에서 출판된 또는 음반의 경우에는 제작된, 제3조에 의한 모든 출판물 가운데 1권(납본)은 독일도서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악보 및 음악음반에 대하여는 그 납본의무의 개시로 독일음악도서관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주무연방장관이 제24조에 의한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으로 정한다.
3. 이 법 제2장의 규정은 전적으로 관공소의 직무내용에 관한 출판물의 제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 납본의무자

- (1) 발행인(Verleger), 음반의 경우에는 제작자는 납본의무를 부담한다.
- (2) 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자비출판자 및 출판업자(der Kommissionsverleger)를 의미하며, 음반제작자라 함은 보급권을 가지고 있는 제작자만을 의미한다.

제20조 제출절차

납본의무자는 무상 또는 자기의 비용으로 Frankfurt am Main의 독일도서관에 납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악보 및 음악음반의 경우에는 그 납본은 독일도서관 음악도서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21조 제출된 출판물의 도서목록

독일도서관은 납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출판물을 도서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도서목록은 판매에 필요한 권수만큼 준비되어야 한다.

제22조 보상

독일도서관은 무상교부가 납본의무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기하여 납본의무자에게 출판물산매가격의 2분의 1까지를 한도로 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보상의 확정에 있어서는 출판물의 판매가격 및 발행부수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23조 신간출판물의 목록

제19조에 의한 모든 납본의무자는 전년도에 출판된 또는 음반의 경우에는, 제작된 출판물이 제3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납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목록을 매년 2월 15일까지 독일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목록은 저자(Verfasser), 제목(Titel), 체적(Vmfang), 발행일자(Ausgabezeiten) 및 판수(Auflagenbezeichnung)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법규명령

납본의무의 질서있는 수행을 위하여 그리고 불합리한 독일도서관의 비대체적 경비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무연방장관은 법규명령으로써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① 제출의 시기 및 절차
- ② 출판물이 수개의 판으로 제작된 경우에 있어서의 납본의 성질 및 제출
- ③ 납본의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출
- ④ 수집, 목록작성 및 도서목록기제에 관하여 하등의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종류의 출판물의 납본의무의 제한

제25조 주법상의 규정

납본의 제출에 관한 주법상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장

종결규정

제26조 Berlin 조항

이 법은 1952년 1월 4일의 제3차 적용(das Dritte Überleitungsgesetz)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Berlin 주에도 적용된다.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제3차 적용법 제14조에 의하여 Berlin 주에 적용된다. 연방상원의 헌법상의 권리는 존중되었다.

이상의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 연방대통령
- 연방수상
- 연방내무부장관
- 연방재무부장관